

■ 【별표 4】

위원위촉 사전 진단서(제11조제9항과 관련)

연번	진단내용	점검사항	
		예	아니오
1	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		
2	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		
3	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(대리 관계를 포함한다)가 되는 경우		
4	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		
5	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		
6	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하항에서 같다.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		
7	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		
8	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, 조사를 한 경우		